

##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

### 새누리의 진단

-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 등의 사각지대와 차상위 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
- 이러한 상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선정시 적용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로부터 기인

### 새누리의 약속

-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,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
-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·재산·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,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 증가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축소
-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(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)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,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지정책별 통합 조정방안 마련

### 새누리의 실천

- 2013년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시행령, 각종 지침 개정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에 따른 소요 재원을 2014년 예산부터 반영

##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

### 새누리의 진단

- 현행 차상위계층 기준은 OECD 상대적 빈곤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정책대상에 포괄하는데 한계
- 현재 빈곤정책은 빈곤화 예방 기능이 미흡하며, 빈곤통계와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(현행 최저생계비 120%)을 OECD '상대 빈곤기준'에 해당하는 '중위소득 50%'로 확대 개편하여,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
  -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층방식을 유지하거나,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층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
-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

### 새누리의 실천

- 최저생계비 계층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
-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정책별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
  -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소요예산을 반영추진

##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

### 새누리의 진단

-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소득역전 등 부작용이 있으며, 이로 인해 근로 의욕 저하와 탈수급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- 특히, 탈수급 시 급여 및 서비스 중단 또는 감소와 함께 사회보험료 등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편익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'맞춤형 급여체계'로 확대 개편
-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
  - 의료 · 교육 · 주거급여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
  - 문화 · 에너지 · 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재설계 운영

### 새누리의 실천

-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 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
-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별 급여체계 구축 및 확대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각 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

##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

### 새누리의 진단

- 근로장려금의 적용 대상을 무자녀 유배우 가구까지 확대하였으나,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근로소득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은 여전히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
- 엄격한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차상위계층과 연동되지 않는 소득기준 등을 개선하고, 근로유인 촉진을 위한 점증구간 확대,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급여체계 확대 등이 필요

### 새누리의 약속

-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
-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
- 점증구간(연간 1,000만원 이상) 및 점증률(30%) 상향 조정
-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반영하고, 재산기준 완화

### 새누리의 실천

-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
- 근로장려세제, 사회보험료 지원, 자산형성지원(희망키움통장) 확대 및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
- '복지-고용-교육-사회서비스' 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

##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

### 새누리의 진단

-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, 노인장기요양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정책 역시 확대되고 있음.
-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복지인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급여수준, 열악한 근무조건 등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,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
- 사회복지시설, 보육시설,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
  -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와 급여체계 수립 및 이를 통한 복지일자리 처우의 현실화
- 사회복지무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

### 새누리의 실천

-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 과정에서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추진
- 2013~2017년 중장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인력 충원계획 수립
  - 2014년부터 인력확충,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추진